

2026-2학기 입대휴학 안내

2026학년도 2학기 개강일 이후 입대 예정자는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. 2026. 11. 13.(금) 이전 입대할 경우 2026학년도 2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되나, 11. 14.(토) 이후 입대자는 일반휴학 학기로 인정됩니다.

※ 단, 재학 중 학기 2/3선(11월 13일) 다음 날인 11월 14일부터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와 성적이 인정되어 휴학 신청 일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

■ 신청기간

휴학신청 및 승인시점	휴학 신청 자격	수업료 반환
2026. 8. 3.(월) 10:00 ~ 9. 14.(월) 17:00	- 2026. 9. 14.(월)까지 입대하는 자 - 등록금 납부 여부 와 관계없이 입대휴학 신청 가능하며,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즉시 휴학 신청 가능	수업료 전액
2026. 9. 15.(화) 9:00 ~ 11. 13.(금) 17:00	- 2026. 9. 15.(화)이후 입대하는 자 - 일반휴학을 2026. 9. 14.(월)까지 우선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없이 신청 가능 ※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9. 14.(월)이 경과한 경우,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만 입대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	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을 적용
2026. 11. 14.(토) 9:00 ~ 2027. 1. 31.(일) 17:00	- 2026. 11. 14.(토)부터 입대하는 자(재학생, 휴학생 모두) -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	수업료 반환 없음

※ 2027년 2월 이후에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2027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기간에 맞춰 입대휴학 신청할 것

■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

- 가. 학기 2/3선(2026. 11. 13.)까지 입대: 해당학기는 일반휴학 '휴학학기' 수에 포함되지 않음
- 나. 일반휴학 중 학기 2/3선(2026. 11. 14.부터) 후 입대: 해당학기는 일반휴학 '휴학학기' 수에 포함됨
- 다. 일반휴학 중 입대 시에는 입대 전까지 입대휴학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. 입대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

■ 신청 방법(입영통지서 지참)

- 신청방법: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휴학신청 ⇨ 휴학구분: 입대휴학 신청 및 증빙서류 등재(입영통지서 첫 장, 2MB 이하)

■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

휴학승인시점	수업료 반환율	비고
2026. 9. 14.(월) 17:00 까지	전액	
9. 30.(수) 17:00 까지	수업료의 5/6	
10. 30.(금) 17:00 까지	수업료의 2/3	
11. 13.(금) 17:00 까지	수업료의 1/2	학기 2/3선

가.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

나.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: 휴학 승인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15일

다. 반환 계좌: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(계좌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)

라.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

마. **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 후 휴학 신청 가능**

■ 입대휴학의 취소 및 재입대

가. 입대휴학이 승인된 이후 귀가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되면,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(귀가증명서 등)와 입대휴학 취소원을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기존의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

나.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, 학적 상태는 직전 상태(재학 또는 일반휴학)로 환원됨

다. 재입대가 확정되면 입대휴학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학사포탈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입대휴학을 재승인 받아야 함

■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 인정

가. 학기 2/3선(2026. 11. 13.)까지 입대

-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
- 해당 학기는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(일반휴학 “휴학학기” 수에 포함되지 않음)

나. 학기 2/3선(2026. 11. 13.부터)이후 입대

- 해당 학기는 재학 학기로 인정
-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함. 단,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담당교수의 권한
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교수와 확인해야 함

다. 관련 규정: 학사에 대한 내규 제 25조

- 학교 홈페이지 미래캠퍼스 ⇨ 연세소개 ⇨ 대학현황 ⇨ 규정집 ⇨ 본문 ‘휴학’ 검색하여 확인 가능

■ 유의사항

가.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 요망.

나.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.

다. 최대 휴학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,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.

라. 휴학 학기 수 : 통합 6학기.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/2을 넘지 못함.

마. 장학금은 휴학 신청 전 학생파트(033-741-0224)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고 반납한 뒤 휴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함.

바. 주요 학사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 [학적-자료조회-자료수정]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함.

사. 재학증명서는 복학 및 수강신청과 등록금(수업료)이 완납되어야 발급 가능.

아. 일반휴학 관련 상세 규정: ☑학칙 제 8장, ☑학사에대한내규 제 6장, 제 8장 등

- 대학홈페이지 ⇨ 연세소개 ⇨ 대학현황 ⇨ 규정집 ⇨ 본문 ‘휴학’ 검색하여 확인 가능

<업무별 연락처>

- 휴·복학, 등록(금), 장학금 : 학생파트(033-741-0224)
- 수강신청 : 교육파트(033-741-0225)
- 기숙사 : 학생파트(033-741-0217)
-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: 학생건강공제회(033-760-5430)
- 예비군관련 : 비상계획파트(033-741-1032)